

학교 생활 규정

군산제일중학교

군산제일중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군산제일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하며,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 생활

제4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9조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0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 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3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5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 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⑦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8조 (용의 복장)

- ①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 ② 화장 등 미용에 관련된 용품은 교육활동 시간(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는 사용을 금한다.
- ③ 교복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여학생은 교복 치마와 교복 바지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한다.
- ⑤ 두발은 학생 신분에게 맞는 단정한 모습으로 한다.

제19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0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1조 (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 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⑥ 물품 도난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 (동아리활동)

- ① 학생은 방과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2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포상,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은 위원장, 인성인권 부장은 간사로 하며, 학부모대표(각 학년)3명, 교사대표(각 학년 부장, 상담 교사)4명, 학생대표 2명 등을 위원으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5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26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⑥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의 징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27조 (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학교환경 정리활동,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교구 정비,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및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 등교한 후 지정 장소에서 독서나 자율 학습 등을 부여하여 보호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4장 포상

제32조 (내용, 실시시기, 추천방법)

- ① 시상은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으로 한다.
- ② 시상은 1학기, 2학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담임교사, 비담임교사는 포상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33조 (자격)

시상 대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 ②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 ③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 ④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 ⑤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 ⑥ 효행심이 지극한 학생
- ⑦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
- ⑧ 1~7항 이외에 기타 모범적인 행동을 한 학생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34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35조 (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6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5.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7조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 (전자기기 사용 교육)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21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교원 위원은 인성인권부장, 각 학년 부장(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생활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2명),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2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1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3조 (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지]

구분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준법	1	교사, 어른에게 폭력(언어 및 문자 메시지 포함)을 가한 학생		0	0	0
	2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3	학교 기물, 공공 시설물, 교사 차량, 일반 차량을 고의로 파손	0	0	0	0
	4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5	학생을 선동하여 시위나 집단행동을 주동한 학생		0	0	0
	6	절도(자전거, 휴대폰, 전자기기, 지갑, 참고서 등)	0	0	0	0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8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0	0	0	
	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0
수업 (시험)	10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 및 상습적으로 방해한 학생	0	0		
	11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12	시험을 거부한 학생		0	0	
	13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14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0
근태	15	무단결석, 무단결과,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0	0		
	16	무단가출 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0	0	0	0
약물	17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흡연을 한 학생	0	0	0	
	18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0	0	0
퇴폐 행위	1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0	0	0	
	20	불건전한 이성 교제 (혼숙, 포옹, 입맞춤, 무릎에 앉히기, 유흥업소 출입 등)	0	0	0	0
	21	원조교제를 하여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22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0	0		
집단	23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0	0
	24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2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정보 통신	26	해킹을 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전산망을 침투하여 전산망이나 저장된 자료에 손상을 입힌 학생		0	0	0
기타	2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28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